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따돌림, 괴롭힘 및 차별을 당하지 않는 긍정적이고 안전하며 협조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괴롭힘" 및 "따돌림"은 (a) 학생의 교육적 성과, 기회 또는 혜택, 또는 정신적, 정서적 또는 신체적 안녕 기회를 부당하고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효과를 지녔거나 초래할 수 있는; (b) 합리적으로 또는 학생이 신체적 안전을 두려워하게 만들거나 합리적으로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c) 학생에게 신체적 상해 또는 정서적 상해를 합리적으로 유발하거나 합리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d) 학교 외 소유지에서 발생하며, 행위, 위협, 협박 또는 학대가 학교 소유지 내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환경에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하여 행동이나 위협, 협박 또는 학대에 의한 적대적인 환경의 조성입니다. 괴롭힘 및 따돌림 행위에는 사람의 실제 또는 인지 된 인종, 피부색, 체중, 출신 국가, 민족 집단, 종교, 종교적 관행, 장애, 성적 취향, 성별 또는 성에 근거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 정의에서 "위협, 협박 또는 학대"라는 용어에는 구두 및 비언어적 행동이 포함됩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그러한 괴롭힘이나 따돌림이 전자 통신의 어떤 형태로든 발생하는, 위에서 정의 된 괴롭힘 또는 따돌림을 의미합니다.

교육 위원회는 모든 학생들이 존중 받고 존중 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따돌림이나 다른 형태의 괴롭힘이나 차별이 학생들에게 분열적이고 해롭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돌림 및 기타 형태의 괴롭힘 또는 차별은 우리의 학습 환경, 지역 사회의 느낌 및 개인의 행복에 해롭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어떤 종류의 따돌림, 괴롭힘 또는 차별을 용인하지 않으며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구는 구 내에서 행해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구 직원이나 학교 기능 또는 학교 기능을 수행하는 학생이 괴롭히는 모든 형태의 따돌림, 괴롭힘 및 차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교육 구는 또한 인스턴트 메시징, 전자 메일, 웹 사이트, 대화방 및 텍스트 메시징의 사용을 포함 할 수 있는 "사이버 괴롭힘"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따돌림, 괴롭힘 또는 차별을 금지합니다. 다른 형태의 전자 통신 또는 학교 소유지 밖에서 발생하여 학교 환경 내에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행동, 위협, 협박 또는 학대가 학교 소유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이 모든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존엄 행위 조정관 (Dignity Act Coordinator)은 괴롭힘, 따돌림 및 차별 보고를 받는 학교 직원입니다.

따돌림, 괴롭힘 또는 차별을 당하고 있거나 따돌림, 괴롭힘 또는 차별 행위에 대한 인지 있는 학생은 신고해야 합니다. 학생은 괴롭힘, 희롱 또는 차별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보고서를 직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구 직원은 학생에 대한 따돌림, 괴롭힘 또는 차별을 알게 된 경우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직원은 구두 또는 서면을 불문하고 학생들이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따돌림, 괴롭힘 및 차별에 관한 모든 불만 사항과 그들이 알고 있는 따돌림, 괴롭힘 또는 차별 사례를 즉시 구두로 보고 해야 합니다. 존엄 행위 조정관은 보고서를 수령하거나 사건을 목격 한 후 수업 일로 1 일 이내에, 그리고 구두 보고를 한 날로 부터 2 일 이내에 존엄 행위 조정관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군의 성희롱 정책에 정의된 따돌림, 괴롭힘 또는 성적 차별은 교육구의 Title IX 직원에게 반드시 보고 해야 합니다. 범죄 활동과 관련된 따돌림, 괴롭힘 또는 차별 또는 범죄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합당한 신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장에게 보고 해야 합니다. 교장이 괴롭힘, 따돌림 또는 차별 행위가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역의 법 집행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따돌림,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혐의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교육구는 적절한 상황에 있는 당사자와 증인의 신원을 알 필요가 있는 개인에게 공개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존엄 행위 조정관은 따돌림, 괴롭힘 및 차별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서면 신고 접수 후 즉시 모든 조사를 완료합니다. 따돌림, 괴롭힘 또는 차별에 관한 모든 보고서는 철저히 조사 될 것이며 해당 법률 및 교육구 행동 강령에 따라 적절한 징계 조치가 부과 된 것을 포함하여 확인 된 주장을 다루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행동은 합법적으로 괴롭힘, 따돌림 또는 차별을 종식시키고, 적대적인 환경을 제거하며, 보다 긍정적인 학교 문화와 풍토를 조성하고, 행동의 재발을 방지하고, 따돌림,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행들은 따돌림, 괴롭힘 및 차별 사례에 대한 측정 된 균형 잡힌 연령 대응에 대한 법률 및 본 방침에 따라 교육구가 작성한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모든 교장 및 존엄 행위 조정관은 학교의 괴롭힘, 따돌림 및 차별과 관련된 데이터 및 추세에 대해 교육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따돌림,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혐의 또는 보고에 대한 항의자, 희생자, 증인 및 / 또는 조사, 증언, 참여한 개인에 대한 보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교육구 행정관은 그러한 행동이 중지되었는지, 보복이 일어나는 지와 개별적 상담 및 지원 등의 여부가 따돌림, 괴롭힘 또는 차별을 받은 희생자들에게 제공되었는지를 감독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주 교육법의 규정과 교육 국장의 규정에 따라 교육 지침을 작성하고 교직원에게 교육을 제공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돌림, 괴롭힘, 차별에 대한 인식과 잠재적 상승 그리고 따돌림, 괴롭힘 또는 차별 행위 (사이버 괴롭힘 포함)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따돌림, 괴롭힘 또는 차별 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을 지원; 집단 괴롭힘 및 / 또는 차별의

사회적 패턴, 그러한 행동의 식별 및 완화, 교육 환경에서의 배제, 편견 및 공격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 행동 및 규율에 관한 학교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 그리고 교과 과정 및 교실 관리에 있어 안전하고 지원 가능한 학교 풍토 구상을 포함합니다.

교육구는 유치원부터 12 학년까지의 교과 과정에서 성숙함, 시민권 및 인성 교육에 대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한 구성 요소는 따돌림, 괴롭힘 및 차별 행위에 대한 법률 및 규칙 준수, 예의, 존엄성 및 품질을 향상시킬 지역 사회에서의 경험과 기여와 같은 다른 특성에 중점을 두고 정직, 관용, 개인적 책임감, 타인 존중의 원칙들을 학생들에게 지시해야 합니다. 그러한 구성 요소는 괴롭힘, 괴롭힘 및 차별이 없는 학교 환경의 개발을 지원해야 하며 인터넷 및 전자 통신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사용에 관한 지침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다양한 인종, 피부색, 체중, 국적, 인종, 종교, 종교적 관습,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 성적 성향, 성별 및 성별 그룹의 관계에 대한 집단 괴롭힘, 차별 또는 괴롭힘 및 예의에 대한 인식 및 민감성이 포함하여, "관용", "타인 존중" 및 "존엄성"입니다

주 법에 따라 학교 교육감 또는 그가 지명한 그/그녀의 승인을 받고 존엄성 규정에 따라 모든 학생 행동 규정을 지시할 존엄성 행동 조종자 (Dignity Act Coordinator)로서 각 학교의 직원 1 명 이상을 지명합니다; 인종, 피부색, 체중, 출신 국가, 민족 집단, 종교, 종교 실천, 장애, 성적 취향, 성별 및 성별에 관한 인간 관계를 다룰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인종, 피부색, 체중, 출신 국가, 민족 집단, 종교, 종교적 관행에 근거한 행위를 포함 하고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따돌림, 괴롭힘 및 차별의 사회적 패턴을 다루는; (2) 괴롭힘, 괴롭힘 및 차별의 식별 및 완화; (3) 교육 환경에서의 배제, 편견, 공격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각 조종자는 학군에 고용되고 교장 선생님, 학교 카운슬러, 학교 심리학자, 학교 간호사, 학교 사회 복지사, 학교 관리자 또는 감독자 또는 학교장이 면허 및 / 또는 인증 한 것입니다. 존엄성 행동 조정관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는 주법 및 감독관 규정에 따라 배포되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감 또는 그/그녀의 지명인은 따돌림, 괴롭힘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학교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구 내에서 이 정책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중재 및 비차별 교육, 상담 방법과 지도를 포함하여, 절차와 지침을 개발한다. 중재, 징계 및 교육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진보적인 모델에 따른 치료 및 절차를 통해서 따돌림, 괴롭힘 또는 차별 사례에 대한 측정된 균형 잡힌 연령 대응의 개발에 관한 차별적인 교육 및 상담 방법 및 지침, 행동의 성격, 학생의 발달 연령 및 학생의 문제 행동 내역 등에 따라 방법을 다르게 하고, 이는 교육구 행동 강령과 일치해야 합니다

학군은 이 정책의 최신판을 웹 사이트에 게시하고 각 학년도 동안 적어도 한 번씩 따돌림, 괴롭힘 및 차별을 신고 할 수 있는 신고 절차 포함하여 각 학교는 직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이 정책의 서면 또는 전자 사본 또는 그 일반 언어 요약본을 학생, 학부모 및 학교 직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교육구는 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생의 차별, 괴롭힘 및 괴롭힘에 관한 중대 사건을 교육부에 보고 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연간 기준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상호 참조: 정책 0100 기회의 균등

정책 0110 성희롱

정책 5300 행동 강령

참조: 교육법 제 2 조,

교육법 § 801-a

8 NYCRR §§ 100.2(c), (jj), (kk)

채택 날짜: 2015 년 3 월 16 일